

[학위청구논문 제출 관련 규정]

■ 경희대학교 대학원 학칙

제33조(논문제출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자는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1. 학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3. 기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 사항

제34조(학위자격 시험) 학위자격 시험은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전공시험, 공개발표 등의 학위 자격 관련 평가를 포괄하며, 학위자격 시험 과목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 경희대학교 대학원 시행세칙

제20조(학위지도교수(논문지도교수)) ①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의 학위지도교수는 본교의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한다.

② 정년까지의 재직예정기간이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석사과정의 경우 4학기, 통합 및 박사과정의 경우 5학기 이내인 교수는 공동학위지도교수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공동지도교수, 학과간협동과정, 학·연·산협동과정인 경우에는 해당 대학원장은 예외조치 할 수 있다.

제25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대학원의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에 관한 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학위청구논문 제출서류 및 시기)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학위논문 제출 승인서(소정양식)
2. 학위논문 제출 추천서(소정양식, 박사과정에 한함)
3. 성적 증명서
4. 이력서(박사과정에 한함)
5. 심사용 논문(석사과정 3부, 박사과정 5부)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은 학기별로 하며, 제출시기는 각 대학원장이 정한다.

■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내규

제62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4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마치고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수료학점 취득 예정자
2. 수료학점을 이수하고 학점의 평점평균이 B-(2.7) 이상인 자

- 3. 학위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 4. 본 내규 제68조 제3항 또는 제4항의 요건을 갖춘 자

제63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이하 "논문심사"라 한다)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논문내용 심사와 구술심사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결과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합격 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고 위원장은 이를 대학원장이 정한 기일 내에 대학원장에게 보고한다.

제64조(논문심사의 합격 등) ① 석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청구논문의 합격은 논문심사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4 이상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에서 불합격한 자는 학위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정·보완한 후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논문심사위원회) ① 석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 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회는 학위지도교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논문심사위원은 학위지도교수가 학과장을 경유하여 대학원장에게 추천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하며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학위지도교수는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③ 논문심사위원은 교체할 수 없다. 다만, 본 내규 제72조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체할 수 있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학칙 시행세칙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6조(논문심사위원 위촉) ① 석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본교 해당 학과 전임교원이 최소 2명 포함되어야 하며, 1명 이내에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과정 논문심사위원회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타학과 또는 타대학교 전임교수 또는 전문가가 최소 1명, 최대 2명까지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 위원은 본교 해당 학과 또는 본교 동일전공분야 전임교원으로 한다.

③ 논문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타 학과, 타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전임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④ 논문심사위원은 신분증 사본 또는 재직증명서 등 제2항의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68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문으로 작성한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하고 영문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문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심사용 학위청구논문은 가제본된 것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논문심사결과 합격판정을 받

은 논문은 대학원장이 정한 양식에 따라 제본된 것을 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석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 또는 게재하거나, 국제학술대회 또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논문을 발행하는 학회의 학술대회에서 발표를 하여야 하며, 신청, 게재 또는 발표 증명서를 학위청구 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계약학과의 경우, 해당 학과의 내규에 따른다.

④ 박사과정의 경우 졸업요건으로서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은 한국연구재단 국내1급 등재지 또는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자연과학·공학·의학계열은 SCI(E)급 이상의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야 하며, 게재(예정) 증명서를 학위청구논문심사 결과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예정 증명서를 제출한 자는 게재 완료 후 30일 이내 해당 논문 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증빙 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반 절차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⑤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게재 신청 또는 게재는 제2항, 제3항과 학과 내규를 따른다.

⑥ 학과(전공)에 따라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 제3항 내지 제4항의 논문은 단독 및 공동게재(제1저자, 교신저자, 공동저자)가 가능하며, 2010학년도 1학기 입학한 신·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단, 국제캠퍼스 박사과정은 공동게재 시 반드시 제1저자나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⑧ 학술지 신청 또는 게재 논문은 본 대학원 입학일 이후 본교 또는 본 대학원 소속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제72조(학위지도교수의 변경) 학위지도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변경사유"라 한다)에는 학위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한다.

1. 퇴직한 경우
2.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여행을 하게 된 경우
3. 1년을 초과하여 휴직한 경우
4. 기타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 및 연구과정 운영지침

제48조(논문제출자격)

① 일반대학원 학칙 제33조 각 호의 자격요건 및 본 규정의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자는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박사과정의 수료자는 학위논문심사를 청구하기 위해서 당해 학기에 연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학위논문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학위논문주제와 관련된 논문2편 이상을 등재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하며 등재학술지에 게재하기로 확정된 것도 포함할 수 있다. 단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에 이를 적용한다.

제49조(논문심사위원회)

① 논문심사위원회는 5인(논문지도교수 포함)의 박사학위 자격이 있는 전임교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문인사로 구성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회는 학위논문청구 학생의 논문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서 주임교수가 위촉을 의뢰한다.
- ③ 전항의 경우 논문지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을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여야 하고, 본교 전임교원이 아닌 자를 논문심사위원 후보로 추천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임교수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 ④ 전항에 기해서 추천된 논문심사위원후보에 의해서 적실한 논문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임교수는 당해 논문지도교수에게 새로운 심사위원후보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 ⑤ 주임교수는 추천된 심사위원 후보 중 1인을 위원장후보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50조(심사위원명단의 공개)

주임교수는 당해 학기 각 학위청구논문에 대한 논문심사위원의 명단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심사의 방법)

- ① 학위논문의 심사는 논문의 심사와 논문에 대한 구술시험으로 한다.
- ② 심사위원은 기한을 정해서 논문의 형식 및 내용의 수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52조(심사의 종결)

- ① 학위논문심사의 합격은 논문지도교수가 아닌 3인 이상의 심사위원의 각 찬성으로 결정한다.
- ② 논문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종결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심사의 결과서를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